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세입예산

■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53억 6백만원임.

※ 2021년 조직 신설에 따라 예산 현액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 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0	0	15,305,85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보조금	0	0	15,305,85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등	0	0	15,305,85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 장·관·항으로 작성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 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0	0	15,305,85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보조금	0	0	15,305,85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등	0	0	15,305,85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0	1,966,550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아동청소년 보호	0	1,712,460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0	6,439,167	순증	순증	순증	순증
	교통안전 전 홍 보	0	780,570	순증	순증	순증	순증
	교통안전 활동	0	519,71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교통장비 관리	0	3,887,393	순증	순증	순증	순증

※ 목별 작성

2. 세출예산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세출예산은 192억 9백만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천만원 대비 38,319.9% 증액된 수준이며, 2021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1억 8천 5백만원 대비 10,283.1%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50,000	185,011	19,209,993	19,159,993	19,024,982	38,319	10,283	
행정관리	소 계	50,000	185,011	19,209,993	11,900,862	11,765,851	23,801	6,359
	행정운영경비	0	87,152	294,778	294,778	207,626	238	238
	재무활동	0	0	0	0	0	0	0
	사업비	50,000	97,859	18,915,215	18,865,215	18,817,356	37,730	19,229

〈 2022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1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	2021년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50,000	185,011	19,209,993	19,159,993	19,024,982	38,319	10,283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50,000	97,859	1,010,649	960,649	912,790	1,921	1,091
자치경찰 제도 정비	50,000	97,859	960,649	910,649	862,790	1,821	446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50,000	97,859	162,000	112,000	64,141	224	65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 관리 운영	0	0	79,600	79,600	79,600	순증	순증
자치경찰 위원회 운영	0	0	196,849	196,849	196,849	순증	순증
서울시 치안 연계사업 지원 강화	0	0	107,200	107,200	107,200	순증	순증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	2021년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서울형 자치 경찰제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0	0	60,000	60,000	60,000	순증	순증
	지방행정과 치인행정의 유기적 결합 추진	0	0	405,000	405,000	405,000	순증	순증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0	0	395,000	395,000	395,000	순증	순증
	한강공원 안전 확보 강화방안	0	0	10,000	10,000	10,000	순증	순증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	0	0	(x15,305,856) 17,432,656	17,432,656	17,432,656	순증	순증
	자치경찰 복지 증진 및 인권·감사	0	0	2,126,800	2,126,800	2,126,800	순증	순증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0	0	2,015,000	2,015,000	2,015,000	순증	순증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0	0	111,800	111,800	111,800	순증	순증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0	0	(x15,305,856) 15,305,856	15,305,856	15,305,856	순증	순증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0	0	(x1,966,550) 1,966,550	1,966,550	1,966,550	순증	순증
	아동청소년 보호	0	0	(x1,712,460) 1,712,460	1,712,460	1,712,460	순증	순증
	아동안전 지킴이 운영	0	0	(x6,439,167) 6,439,167	6,439,167	6,439,167	순증	순증
	교통안전 교육홍보	0	0	(x780,570) 780,570	780,570	780,570	순증	순증
	교통안전 활동	0	0	(x519,716) 519,716	519,716	519,716	순증	순증
	교통장비 관리	0	0	(x3,887,393) 3,887,393	3,887,393	3,887,393	순증	순증
	시-경찰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축	0	0	471,910	417,910	417,910	순증	순증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	2021년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시-경찰 협력 강화	0	0	65,800	65,800	65,800	순증	순증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 체계 구축	0	0	65,800	65,800	65,800	순증	순증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	0	0	406,110	406,110	406,110	순증	순증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0	0	100,000	100,000	100,000	순증	순증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교통경찰 지원	0	0	30,000	30,000	30,000	순증	순증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된 시민 교통편의 제공	0	0	176,110	176,110	176,110	순증	순증
자율방범대 연합회 지원	0	0	100,000	100,000	100,000	순증	순증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53억 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2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 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0	0	15,305,85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보조금	0	0	15,305,85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등	0	0	15,305,85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 2022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 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0	0	15,305,85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보조금	0	0	15,305,85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등	0	0	15,305,85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0	1,966,550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아동청소년 보호	0	1,712,460	순증	순증	순증	순증
	아동안전자킴이 운영	0	6,439,167	순증	순증	순증	순증
	교통안전 홍보	0	780,570	순증	순증	순증	순증
	교통안전 활동	0	519,716	순증	순증	순증	순증
	교통장비 관리	0	3,887,393	순증	순증	순증	순증

-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찰사무 중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고, 관련 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제35조)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역시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다만, 「경찰법」 제34조에 따라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도 도입 초기인 2022년 예산 안에서는 기존 경찰청 예산 중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목으로 편성함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국고보조금으로 153억 6백만원이 가내시(임시통보)되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하지만, 2022년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명과 산출기초별 예산까지 모두 지정된 국고보조금 형태로 가내시되었는바, 이는 법령(「경찰법」 제3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할 것임.

※ 2022년 시·도 경찰청 보조금 배정 금액 참조.

<2022년 시,도경찰청 보조금 배정 금액>

관서별	내용	01 일반수용비			
		지하철경찰대 일반수용비		한강경찰대 치안센터 운영비	
	1531-311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자치)	금액	배정기준	금액	배정기준
합계					
실링금액					
전환금액	2,006,348	76,139		14,400	
서울	2,006,348	76,139	본대 : 840천원*1개소*12개월 수사대 : 615천원*4개소*12월 출장소 : 117,391원*24개소*12월 외국인 조사 봉역비 : 2730천원	14,400	300천원*4개소*12월

○ 더욱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전국 시·도 국비지원액 배분에 있어서 서울시 치안수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배분으로 서울시 치안수요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한 국비지원 규모이고, 법(「경찰법」 제34조)에서 국가는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장비교체 비용 등에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바, 자치경찰사무의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0월 전국 시·도 국비지원액 배분에 있어서도 서울의 치안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경찰청에 건의(‘21.10.28 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시)한 바 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 ▶ 서울 치안수요(112접수) : 21.6%(전국 신고건수 19백만 건 대비 서울 4.1백만 건)
- ▶ 서울시 국비지원 비율 : 11.7%(전국 자치경찰사무 예산 1,306억원 중 서울시 153억원)

※ 한강경찰대 노후 순찰청 교체 및 공기충전기 신규설치를 위해 8억 4천 5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국비로는 1억 3천 5백만원만 편성된 상황임.

- 특히, 「지방자치법」 제122조제2항에서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법」 제34조에서도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무엇보다 국가의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2022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참조
(대한민국정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 3권)

- 2022년 경찰청 예산은 12조 2,758억원임.
- 이 중 사업비는 2조 5,383억원이고, 자치경찰사무 예산은 1,306억원((5.1%)임.

<2022도 경찰청 세출예산안 경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예산		2022 예산안 (B)	증감 (B-A)	%	점유율
	본예산	추경(A)				
합 계(총지출)	11,965,065	11,968,905	12,275,835	306,930	2.6	100.0
인 건 비	9,116,293	9,116,293	9,359,596	243,303	2.7	76.2
기본경비	370,394	370,394	377,903	7,509	2.0	3.1
주요사업비	2,478,378	2,482,218	2,538,336	56,118	2.3	20.7

- 지난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재정지원 방안을 원안 가결(제34차 본회의, '21.7.23.)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국고보조금 가내시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최소 운영경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하였고, 지난 11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2년도 경찰청 예산안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최종적으로 사무국 운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2년 11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는 2022년 경찰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정부는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예산을 제도 도입 초기 일정 기간 국비로 편성하되, 경찰청이 아닌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도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다”고 하고 있음(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11., 788면 재인용).

※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11., 826면 재인용.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지원 (1500-000) <신규>	-	-	-	38,659	38,659	○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세부사업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지원’을 신설하고 예산 386억 5,900만원 반영 필요 ※ 인건비 272억 5,000만원, 운영비 99억 3,900만원, 임차료 14억 7,000만원
---------------------------------------	---	---	---	--------	--------	--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비용은 29억 2천만원으로 산정되었음.

○ 또한, 더 나아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목적세 신설,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자치경찰사무 관련 교통 범칙금 지방 이양, 소방특별회계와 같은 자치경찰특별회계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이고, 현재 지방교부세 중 용도가 지정된 특별·소방안전교부세가 있고, 소방의 경우에는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재정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있음.

※ 참고로, 2단계 재정분권 당·정·청 합의안은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2023년 2개년도에 걸쳐 총 2조 2,500억원 규모의 41개 내역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이며, 경찰청 소관 자치경찰사무 관련 1,133억원 규모의 예산 역시 2023년 지방이양 대상으로 계획되었음. 또한,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함.1)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요약 >

- ◆ 지방소비세율 4.3%p(연 4.1조원) 인상
- ◆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연 1조원)
- ◆ 기초연금 등 연 0.2조원 규모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인상

※ 다만, 2023년에 지방이양 예산도 2022년 예산 규모와 동일하게 책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치안수요를 고려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가 예산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해당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4년간 보전 예정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2026년도까지 4년 동안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만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끔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투자 여부 등을 평가해 예산을 조정한다는 조건이 있어, 예산권에 대한 향후 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²⁾

-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 자치분권 한걸음 더, 2021년 11월 11일자 참조.
- 2) 박완주 국회의원, 자치경찰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예산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해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21년 10월 4일 참조.

2. 세출예산 검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세출예산(192억9백만원) 중 사업비 예산은 189억 1천 5백만원으로 2021년 최종예산(9천8백만원) 대비 19,229.0%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1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50,000	185,011	19,209,993	19,159,993	19,024,982	38,319	10,283	
행정관리	소 계	50,000	185,011	19,209,993	11,900,862	11,765,851	23,801	6,359
	행정운영경비	0	87,152	294,778	294,778	207,626	238	238
	재무활동	0	0	0	0	0	0	0
	사업비	50,000	97,859	18,915,215	18,865,215	18,817,356	37,730	19,229

가.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 현황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예산 중 2022년 신규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자치경찰 인사관리 운영” 사업 7천 9백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업 1억 9천 6백만원,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0억 1천 5백만원 등 12개 사업에 33억 4천 7백만원과 서울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인 신규사업으로는 “범죄 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19억 6천 6백만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64억 3천 9백만원, “교통장비 관리” 38억 8천 7백만원 등 6개 사업에 153억 6백만원 등 총 186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신규사업 현황 : 12개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2년도	편성 사유
1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자치경찰 인사관리 운영	79,600	'21.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
2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196,849	'21.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서울 자치경찰지휘·감독을 위한 위원회 운영
3	서울시 치안 연계사업 지원 강화	107,200	'21.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시-경 합동 치안 정책 수행을 위한 경비 편성
4	서울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60,000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법령·예산 등 분야별 제도 개선 사항 도출 및 서울시에 최적화되고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구현방향 마련 위한 용역 수행
5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구축	395,000	매년 증가하는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취약 구역 내 LED조명판, 비상벨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반영
6	한강공원 안전확보 강화방안	10,000	한강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비용 편성
7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2,015,000	자치경찰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 자치경찰제도 조기 정착 및 안정적 업무 수행 도모
8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 감사 운영	111,800	제도 시행 초기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울형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하여 시·자치경찰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9	자치경찰 유관기관 상시협력체계 구축	65,800	'21.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시-경-교육청 등 치안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에 최적화된 치안정책 방안 마련
10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100,000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물티슈, 의약품 등 지원
11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교통경찰 지원	30,000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대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비용 편성
12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된 시민 교통편의 제공	176,110	교통 안전 활동을 보조하는 녹색어머니회 및 모범운전자회의 활동비를 보조

〈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신규사업 현황 : 6개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2년도	편성 사유
1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1,966,550	자율방범대 지원, 여성범죄 예방, 불법풍속사범 단속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안전한 치안환경 구현
2	아동청소년 보호	1,712,460	학교폭력예방, 위기청소년 선도,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체계 운영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조성
3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6,439,167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으로 통학로 등 아동대상 범죄 다발지역 집중순찰로 안전한 환경 제공
4	교통안전 교육홍보	780,570	교통협력단체 지원으로 통학로 교통지도, 혼잡교차로 교통정리 등을 통한 교통질서확립
5	교통안전 활동	519,716	교통안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음주단속, 교통단속을 위한 장비구입
6	교통장비 관리	3,887,393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및 관리, 교통표지판 설치 및 관리, 음주단속장비 구매로 교통질서확립

○ 사업수행주체가 서울경찰청인 6개 사업은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역시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 2022년 사업비는 사업명과 산출기초별 예산까지 모두 지정된 국고 보조금 형태로 교부되는바,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업비를 서울경찰청으로 재배정하는 역할만 담당하게 되는바, 이는 법령(「경찰법」 제3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2023년부터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예산 집행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바, 서울경찰청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실적 및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등의 적극적인 점검을 통하여 2023년 예산 편성시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6천4백만원, 65.5%증액)” 1개 사업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출기초에 따른 증액인지 여부와 사업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주요증액 사업 현황(20%) : 1개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97,859	162,000	64,141	65.5%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라 제도 적극 홍보

나. 서울시 자치경찰제 홍보

- 동 사업은 서울시 자치경찰이 추진하는 민생·치안 주요시책 홍보강화로 시민들의 치안체감만족도 제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시민·경찰관의 인지도 확산 등을 통해 ‘서울형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9천8백만원) 대비 65.5% 증액된 1억 6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50,000	97,859	162,000	64,141	66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0	11,059	0	△11,059	△100
사무관리비	50,000	76,000	160,000	84,000	111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0	0	2,000	2,000	100
특정업무경비	0	10,800	0	△10,800	△100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준비위원회 등 운영 10,000,000원 = 10,000천원	○ 자치경찰 시행 기념주간 집중홍보 = 90,000천원
	○ 자치경찰준비 TF 등 운영 10,000,000 = 10,000천원	- 정책포럼 및 자료집 발간 20,000,000원 = 20,000천원
	○ 자치경찰 관련자료 인쇄비 5,000,000 = 5,000천원	- 서울자치경찰 체험수기 공모전 15,000,000원 = 15,000천원
	○ 자치경찰 제도 도입 대시민 홍보 = 25,000천원	-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40,000,000원 = 40,000천원
		- 시민참여 모바일 이벤트 15,000,000 = 15,000천원
		○ 홍보물 제작(모션그래픽, 리플릿 등) 35,000,000원 = 35,000천원
		○ 자치경찰 현장홍보 = 35,000천원
		- 배너, 마스크목걸이 등 기념품 제작 35,000,000원 = 35,000천원
	증감사유	
	자치경찰제 대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경찰 우려사항 불식을 통해 성공적인 자치경찰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포럼 개최 등이 필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2,000,000원 = 2,000천원
		증감사유
	자치경찰위원회 신설로 인한 신규 예산 편성	

○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이 되어 가고 있으나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시행 의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의 시급성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지난 8월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광주자치경찰 인식도 및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0.3% 자치경찰제를 모른다고 응답하고, 29.7%만 ‘알고 있음’으로 답했다고 함.³⁾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네이버 등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검색하면,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는 뜨지만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는 찾을 수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등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정책에 대한 홍보 확대를 통한 시민인지도 제고 향상과 예산 대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자치경찰 인사관리 운영

- 동 사업의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경비 및 우수 담당 공무원 포상을 통해 서울시 자치경찰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7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79,600	79,600	100
사무관리비	0	0	73,600	73,600	1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0	0	6,000	6,000	100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인사위원회 운영비 = 37,050천원 -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200,000원*연12회*7명 = 16,800천원 -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제작 등 50,000원*연12회*20부

3) 남도일보, 광주시민 10명 중 7명 “자치경찰제 모른다”, 2021년 9월 9일자 참조.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8699>, 최종방문 2021.11.19.)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12,000천원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등 임용장 제작 5,500원*1,500매 = 8,250천원 ○ 고충심사위원회 운영비 = 9,600천원 -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200,000원*연4회*7명 = 5,600천원 -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자료 제작 50,000원*연4회*20부 = 4,000천원 ○ 자치경찰사무 담당 우수 경찰공무원 표창장 제작 5,500원*3,500매 = 19,250천원 ○ 지역치안 유관 협력기관 시민 감사장 5,500원*1,400매 = 7,700천원
		증감사유
	자치경찰위원회 신설로 위임받은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필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업무 추진 6,000,000원 = 6,000천원
		증감사유
	인사 관련 업무 추진 6,000천원	

- 동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련 법령(「경찰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제17조 및 제31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사위원회와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공정인사 구현 및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해양경찰청·시·도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⑧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⑨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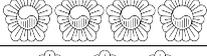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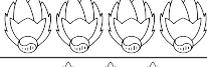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에게 위임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자치경찰위원회,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그 소속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 행사에 적용한다.

1. 시장의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용권 행사
2.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 파견, 휴직, 복직, 직위해제 임용권 행사
3. 자치경찰위원회의 경감 이하에 대한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하 "중징계"라고 한다) 임용권 행사
4.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사 이하로의 승진 임용권 행사

②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경찰공무원 계급

	계 급	계 급 장	급 수	직 위
고위급 간부 (태극 무궁화)	치안총감		차관급	경찰청장
	치안정감		1급 상당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감		2급 이사관	경찰청 국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경무관		3급 부이사관	경찰청 기획관, 송파, 강서경찰서장
중간급 간부 (무궁화)	총경		4급 서기관	경찰청 과장 등
	경정		5급 사무관	경찰서 과장 등
	경감		6급 주사(갑)	경찰서 계장, 지구대장 등
초급간부	경위		6급 주사(을)	파출소장, 경찰서 반장 등
비간부 (무궁화 봉오리)	경사		7급 주사보	
	경장		8급 서기	
	순경		9급 서기보	

※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21.11, 13면.

경찰임용권 수입현황

○ 서 울 시 장 :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용권

- 단,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서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 : 경정 이하 일부 임용권

-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
-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 경감·경위로의 승진임용권 제외)

〈수입 임용권 적용범위〉

- ▶ 적용기관 : 서울경찰청, 31개 경찰서(일선 지구대, 파출소 제외)
- ▶ 담당업무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기능 자치경찰사무(업무비율 51% 이상)
- ▶ 담당인력 : 3,752명('21.9.1. 현원 기준)

□ 임용권 재위임 현황

- 서울경찰청장 요청('21.7.12.)에 따라 휴직·복직·직위해제 등 수시인사와 위원회 재량·판단여지가 없는 중징계, 실무계급인 경위 이하의 전보권 등을 한시적으로 서울경찰청장에게 일부 위임('21. 7.17.~9.30.) 하였으나,

* (경정 이하) 휴직·복직·직위해제, (경감 이하)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위 이하) 전보

- 2021년 10월 1일부터 위원회가 모든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음

구분	전보	파견	휴직·복직· 직위해제	중징계 (파면·해임· 강등·정직)	승진	신규채용 · 면직
경정	자 치 경 찰 위 원 회 (서울경찰청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 재위임 가능) ※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은 서울경찰청장이 임용권 보유				대통령	대통령
경감					서울시장	경찰청장
경위					서울시장	경찰청장
경사 이하						경찰청장

-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규정이 없는데, 서울경찰청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승진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승진임용권 행사에는 제약이 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인사자료 검토가 필요함에도 경찰청의 인사시스템의 접근권한도 없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임용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규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79면.

□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청 시스템 접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시스템 접근 현황

- 위원회 파견 경찰관에 한해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일부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나 국가경찰사무와 수사사무 관련 시스템은 접근 불가(붙임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시스템 중 접근이 가능한 필요한 시스템 내역

- '경찰 표준인사시스템' 접속 권한 필요

※ 경찰청·인사혁신처에서 국가경찰이 운영하는 표준인사시스템에서 자치경찰만 별도분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무국에 접속권한 미부여

-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별도 승진 인원 배정 및 시·도 또는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가 필요한 경찰시스템 접근에 관해서도 경찰청과의 협의 및 제도개선을 통해 필요한 시스템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라.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서울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치안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억 9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196,849	196,849	100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0	0	22,249	22,249	100
사무관리비	0	0	151,000	151,000	1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0	0	2,000	2,000	100
특정업무경비	0	0	21,600	21,600	100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10,766원*14주*4회*3명*12개월 = 21,705천원
		○ 초단시간 근로자 보험료 21,704,256원*2.503% = 544천원
	증감사유	
서울시 부서 초단시간 근로자 3명 보수 및 보험료		
사무관리비		○ 참석 및 심사수당 370,000원*5명*5회*12 = 111,000천원
		○ 회의자료 제작 및 인쇄비 10,000,000 = 10,000천원
		○ 자치경찰 1주년 백서 제작 30,000,000 = 30,000천원
증감사유		
○ 자치경찰위원회 신설로 신규 사업 추진 ○ 법령 상 규정된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자치경찰 1주년 백서 제작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 2,000,000 = 2,000천원
	증감사유	
	합의제 행정기구(위원 7명) 특성 상 자치경찰위원회 본회의 종료 후 간담회 등 개 최가 필요	
특정업무경비		○ 자치경찰위원회 일반직 대민활동비 50,000원*36명*12 = 21,600천원
	증감사유	
	서울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대민활동비(수당) 지급	

- 이는 관련 법령(「경찰법」 제26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에 따라 서울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 및 결과와 출석한 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 ④ 제3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 지난 7월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부터 9월 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13차례 회의에서 정책·예산·인사 등 5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지휘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가락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처 과정에서 경찰력과 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골든타임 내에 총력대응을 해야 했지만 시장은 경찰권 행사에 지휘권이 없어서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과 관련하여 좀 더 강한 지휘·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 동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비상벨, LED 조명 등을 설치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한 것으로 3억 9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395,000	395,000	100
사무관리비	0	0	50,000	50,000	100
시설비	0	0	345,000	345,000	100

○ 범죄 취약지역에 LED조명,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하여 야간의 보행불편 해소 및 범죄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2020년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CPTED) 효과성 분석 연구」 결과, 조명(가로등)을 LED로 교체했더니 야간에 발생하는 강·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주취 소란·청소년 비행 등의 무질서 관련 112 신고가 4.5% 감소하였고,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감시 범위(100m) 안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5대 범죄가 약 11%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함.⁴⁾

- 동 사업은 경찰청에서 지정한 여성안심귀갓길 99개소에 비상벨, 98개소에는 LED 조명과 LED 위치표시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비’로 3억 4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시설비’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시설비		○ 여성안심거리 조성 = 345,000천원
		- 비상벨 설치 1,000,000원*2개*99개소 = 198,000천원
		- LED조명 설치 300,000원*3개*98개소 = 88,200천원
		- LED위치표지판 설치 150,000원*4개*98개소 = 58,800천원
	증감사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신규 편성	

〈 경찰서별 여성안심귀갓길 운영개소 현황 〉

계	중부	종로	남대문	서대문	혜화	용산	성북	동대문	마포	영등포	성동	동작	광진	서부	강북
373	8	6	5	16	9	17	13	11	10	15	6	18	12	6	22
금천	중랑	강남	관악	강서	강동	종암	구로	서초	양천	송파	노원	방배	은평	도봉	수서
6	17	17	21	15	16	11	9	15	4	19	18	8	4	12	7

4) 보안뉴스, 가로등·보안등만 설치해도 범죄가 16%로 줄어든다, 2020년 1월 9일자 참조.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5659&kind=>, 최종방문 2021.11.22.)

※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별도제출자료

□ 사업개요

- 지정현황 : 총 373개소 지정·운영('21.10월 현재)
- 선정기준 : 야간조도, 범죄예방시설 및 사각지대 유무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
 - (야간조도) 평균 조도 20lux* 미만 혹은 주민이 '어둡다'라고 느끼는 지역
 - ※ 20lux : 범죄예방진단팀(CPO) 진단 '양호' 기준으로 15m 이상 거리
 - (범죄예방시설) 범죄예방시설이 없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사각지대) 골목 모퉁이 등 골목길 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지역
- '22년 예산(안) : 8억 40백만원(시비 395, 국비 445)
 - 사업명 : 1인 여성가구 사회안전망 체계구축(시비),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국비)

- 다만,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으로 올해 주택가(10개 자치구, 13개소)의 노후 보안등을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지는 ‘스마트보안등’ 2,941개를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30억원의 예산으로 10개 자치구에 3,060개의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시민참여)” 사업으로 올해 25개 자치구에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24억원의 예산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음.
 - 이 밖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의 “안심귀가 스카우트”와 “안심홈세트” 사업,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서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지능형 CCTV 확대 및 대학가 주변 원룸촌 지역 CCTV 확대 사업 등이 있음.
 - 동 사업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과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과 중복적인 사업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여러 중복 사업이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하겠음.



스마트보안등 개선 전→후

※ 내 손안에 서울, 긴급상황에 ‘깜빡깜빡’ 스마트보안등 귀갓길 안전지킨다, 2021.10.8. 재인용

※ 1인가구특별대책단,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계획(안), 2021.11.

□ 추진목적

- 1인가구가 밀집한 안전취약 지역내 노후 보안등의 스마트보안등 교체를 통해 안전시각지대 해소 및 안심귀가 환경 조성
 - 최근 주거침입범죄 증가('16년 대비 '20년 178% 증가, 경찰청)로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에 거주하는 1인가구 등 안전취약 계층의 야간통행 불안감 증대
 - 서울시 1인가구 주거지 불안의 주된 원인은 ▲보안시설·방법창 등 안전시설 미비(35.1%), ▲주거지 위치(12.5%), ▲가로등 CCTV 등 안전설비 부족(10.1%)
※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8
 - LED보안등 설치로 야간 강 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해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예방에 효과적 ※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경찰청), 202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1월 ~ '22.12월
- 사업규모 : 총 3,060등(10여개 자치구)
 - 대상지 : 서울시 1인가구 주거안심구역
- 주요내용 :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
 - 무선통신(BLE)이 제공되는 IoT비콘점멸기, 연동 가능한 보안등 설치
 - CCTV 연계 및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
- 운영방법
 - (안심이앱) 실행시 스마트보안등의 자동작동(조도조절 및 깜빡임)
 - (현장출동) 관제요원·안심마을보안관·경찰 등이 신고위치 주변 CCTV 확인해 출동

※ 2022년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계획, 스마트도시정책관 제출 자료.

-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시민참여사업은 CCTV 위치를 야간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LED 안내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임.
-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CCTV 및 비상벨 안내판 현황파악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보조금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 예산서 시민참여예산 편성내역

-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 서울시 전 지역: 24억원

※ '21년 당초 예산 대비 1억원 증액(△4%)
(증액사유: 시민참여예산 증가)

※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 자치경찰위원회 제출 자료

□ 유사 사업 현황

① **안심귀가 스카우트**(여성가족정책실) : 56억원 편성

- 여성·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귀가 지원 기간제근로자 500명 채용하는 사업

② **안심홈세트**(여성가족정책실) : 5억원 편성

- 1인 여성·청소년 등 범죄 취약가구 보호를 위해 개별 가구에 CCTV, 휴대용 비상벨, 잠금장치 등을 설치

※ 지능형 CCTV 고도화, 2022년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업별설명서 참조

- 市 전지역 그물망 CCTV 체계구축(시·구 보조금 5:5 매칭)
 - 범죄 취약지역에 방법용 지능형 CCTV 확충(63개소 설치)
 - 대학가 주변 율림촌 지역 CCTV 확대(110개소 설치)

바. 한강공원 안전확보 강화방안

- 동 사업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강공원 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대시민 범죄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여 사전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편의시설	매점, 주차장 등 10종 4,682개소 ▶ 매점 28, 주차장 43, 공중전화 9, 화장실 125, 음수대 159, 그늘막 580, 의자 3,706, 공원안내도 19, 전망카페·쉼터 12, 전망문화콤플렉스(서울생각마루) 1
운동시설	축구장, 야구장 등 21종, 261면 ▶ 축구 12, 배구 10, 농구 29, 테니스 32, 배드민턴장 24, 게이트볼장 18, 족구장 25, 야외체력단련장 80, 그 외 31
녹지대	자연학습장, 잔디, 갈대 등 7종 5,078천㎡
<input type="checkbox"/> 수상시설 — 유·도선장 등 총 57 개소 <input type="radio"/> 유선장 19, 도선장 1, 협회·단체 5, 선착장 27(시 12, 수상택시 9, 소방서 4, 정부 2), 기타 5(세빛섬, 여의도 물빛무대, 월드컵 분수대, 뉘시전용공간, 서울함)	

사. 자치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 동 사업은 자치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와 자치경찰공무원 근무환경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원활한 자치경찰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억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2,015,000	2,015,000	100
사무관리비	0	0	10,000	10,000	100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0	0	2,000,000	2,000,000	1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0	0	5,000	5,000	100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input type="radio"/> 제도 개선 관련 설명회, 자문회의 등 운영 = 10,000천원 <input type="radio"/> 자문회의 200천원*10명*3회 = 6,000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설명회 1,000천원*4회 = 4,000천원
	증감사유	
	○ 조직 신설('21. 7. 1.)에 따른 신규 사업 수행을 위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4,000명*500천원 = 2,000,000천원
	증감사유	
	○ 조직 신설('21. 7. 1.)에 따른 신규 사업 수행을 위함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 근무환경 개선관련 간담회 개최 500천원*10회 = 5,000천원
	증감사유	
	○ 조직 신설('21. 7. 1.)에 따른 신규 사업 수행을 위함	

-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752명)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반·공무직(138명) 등 총 3,890명의 복지포인트 차액(약 110만원) 일괄 확보에 대한 예산부담에 따라 4년에 걸쳐 연차별 점진적으로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일단 복지포인트 차액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관련 별도 제출자료 참조.

국가와 지자체 간 후생복지제도 적용 및 체계 다르나, 목적·혜택 유사

- 자치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경찰 후생혜택 적용 중
- 市 후생복지 제도는 내부직원 수요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 전세자금대출, 종합 건강검진, 영화·공연 바우처, 온라인 홈 건강 강좌 등
- 市 서울경찰청 후생복지체계 분석결과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가장 큰 격차(1,100P)발생
- 주요 후생현황

구분	서울시	서울경찰청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 1,500P, 1년 근속당 8P(최대 200P)	기본 400P, 1년 근속당 10P(최대 300P)
종합건강검진	- 종합검진 비 연령대별 차등 지원 - 20~30대(20만), 40대(30만), 50대(45만)	- 국가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야간근무자 限) - 보훈병원 30%할인

체육문화행사	년1회 기관별 개최(인당 26,000원 상당 지급)	없음
영화·공연 바우처	영화·공연·온라인동영상(OTT) 6,000할인 8매/년	영화할인 2,000원 상당/횟수제한 없음

□ 적용대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 일반·공무직**

○ 적용기관 : 서울경찰청, 31개 경찰서 ※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은 국가경찰 소관임

○ 담당업무 :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 대 상 : 자치경찰공무원 총 3,890명(일반직·공무직 138명 포함)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3,752명+일반·공무직 138명 ※ 현원 기준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현황('21.9월 기준) (단위 : 명)

구분(단위 : 명)	합계	계		서울청		경찰서	
		국가	자치	국가	자치	국가	자치
합계	4,454	702	3,752	299	405	403	3,347
자치경찰위원회	17	-	17	-	10	-	7
생활안전	403	36	367	6	112	30	255
생활질서	270	69	201	4	55	65	146
여성청소년	1,190	118	1,072	54	43	64	1,029
지하철경찰대	181	92	89	92	89	-	-
교통관리	256	127	129	16	22	111	107
교통안전	1,944	259	1,685	126	71	133	1,614
실종수사	193	1	192	1	3	-	189

※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설명서 참조

○ 사업의 주요내용

-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후생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 및 간담회 실시

-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 차액(약110만원)을 지급

· 총 소요액(44억원=4,000명×110만원)일괄 확보에 대한 예산부담을 경감하고자 4년에 걸쳐 연차별 점진적 지급 추진

· (22년) 예산액20억(인당50만원) ⇒ (23년) 예산액30억(인당75만원)

⇒ (24년) 예산액36억(인당90만원) ⇒ (25년) 예산액44억(인당110만원)

-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지원은 관련 법령 (「경찰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후생 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예산)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법 제35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시·도별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이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하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바, 현재 구성('21.8.5.)되어 있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논의를 통해 후생복지 대상 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마련 등의 노력이 요망 된다고 하겠음.

〈 전국의 시·도 자치경찰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현황 〉

사도	예산편성 현황	예산 편성안 (백만원)	지원 대상(명)			1인당 지원액	지원 방식	시·도 기본포인트
			합계	시·도 경찰청(서)	지구대 파출소			
서울	편 성	2,000	3,890	3,890	-	50만원	연차별	1,500P
부산	편 성	1,300	5,000	1,300	3,700	25만원	연차별	950P
대구	예산부서 식감	2,900	3,430	900	2,530	70만원	전 액	1,100P
인천	편 성	660	1,041	1,041	-	60만원	전 액	1,000P
광주	예산부서 식감	530	1,800	550	1,250	29만원	연차별	1,000P

대전	편성	440	1,826	602	1,257	24만원	연차별	1,000P
울산	편성	980	1,350	450	900	30만원	연차별	1,100P
세종	편성	67	280	113	167	24만원	연차별	900P
경기	편성	9,000	14,400	3,659	10,741	100만원(임용권) 50만원(기타)	연차별	1,130P
강원	편성	420	632	632	-	50만원	전액	900P
충북	예산부서합중	380	539	539	-	50만원	전액	900P
충남	편성	1,350	2,713	775	1,938	50만원	연차별	1,160P
전북	편성	757	3,028	799	2,229	25만원	연차별	900P
전남	편성	400	800	800	-	50만원	전액	900P
경북	편성	500	1,000	1,000	-	50만원	전액	900P
경남	미편성	미편성	1,015	1,015	-	미편성	연차별	700P
제주	미편성	미편성	3	3(사무국)	-	미편성	연차별	900P

※ 충북 협의(안) :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당 50만원, 건강검진비 20만원

※ 경남 : 건강검진 지원만 편성 후 전액 삭감됨

※ 2022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관련 별도제출자료

- 또한,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경찰청의 후생복지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시(市) 내부 공무원들의 불이익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복지지원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 및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등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 수립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아. 자치경찰 교육 및 인권·감사 운영

- 동 사업은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현장 교육을 통해 원활한 자치경찰 업무 추진 도모와 인권보호 교육, 면밀한 감사활동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억 1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111,800	111,800	100
사무관리비	0	0	106,800	106,800	1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0	0	5,000	5,000	100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자치경찰교육 콘텐츠 개발 = 35,000천원
		- 현장 중심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개발 25,000,000원*1편 = 25,000천원
		- e-러닝 강의 콘텐츠 개발 5,000,000원*2편 = 10,000천원
		○ 자치경찰 인권교육 = 35,000천원
		- 현장 중심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개발 25,000,000원*1편 = 25,000천원
		- e-러닝 강의 콘텐츠 개발 5,000,000원*2편 = 10,000천원
		○ 자치경찰제도 특강 = 3,000천원
		- 강사료 400,000원*2명*2회 = 1,600천원
		- 운영 경비(대관료 등) 700,000*2회 = 1,400천원
		○ 찾아가는 자치경찰 현장 교육 = 15,000천원
		- 강사료 400,000*1명*5회 = 2,000천원
		- 운영 경비(대관료 등) 600,000*5회 = 3,000천원
		- 교육책자 제작 10,000,000 = 10,000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인권 관련 자문회의 운영 200,000*10명*5회 = 10,000천원 ○ 감사처분심의회 운영 200,000원*5명*5회 = 5,000천원 ○ 제안서평가, 주요 감사 설명회 등 = 3,800천원 - 제안서평가 위원수당 200,000*7명*2회 = 2,800천원 - 주요 감사 설명회 및 회의 운영 100,000원*10회 = 1,000천원
	증감사유	
	조직 신설('21. 7. 1.)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으로 시·자치경찰 공무원 대상 자치경찰, 인권 교육콘텐츠 제작·운영 및 현장교육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인권의 이해 도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교육 및 감사활동 지원 500,000원*10회 = 5,000천원
	증감사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적절한 감사활동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적법성 확보	

-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서는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위원회의 감사)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칙(이하 "위원회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이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권은 배제되고, 요구만 할 수 있고, 실제로 감찰 요구를 하더라도 서울 경찰청장이 이를 거부하면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이 없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없으며, 경찰관서장을 상대로 징계절차 진행을 요구만 할 수 있는바, 징계절차진행과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146-147면.

○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감사대상

- 감사대상은 '자치경찰위원회,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

-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감사 규칙제정 현황
 - 감사규칙(안)을 마련하여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협의 진행 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감사계획 또는 방침
 -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주로 서울청과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체감사를 추진할 계획임
 - 구체적인 계획 또는 방침은 감사규칙 제정 후 수립 예정
- 자치경찰위원회의 감사권 행사에 관한 어려움 및 개선방안
 - 경찰법 등 관련법령에 감사대상·절차·방법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감사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별도 협의 등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135-136면.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징계 절차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감사, 민원, 언론보도, 외부기관 통보사항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인지한 경우, 대상자의 징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징계절차 진행 요구 → 징계 관할 경찰관서장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절차 진행 → 징계 결과를 자치경찰 위원회에 통보
 - ※ 현행 경찰법상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없고, 경찰관서장을 상대로 '징계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실제 징계 사례 및 경찰청과의 협의 내역과 향후 개선방안
 -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실제 징계 사례 : 없음
 - 경찰청과의 협의내역과 향후 개선방안
 -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정을 추진 중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에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에게 징계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협의하였음
 - 다만,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임용권과 지휘권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실질적인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처럼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비위와 징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는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감찰과 징계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 동 사업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입원 시 사용하는 의료물품 지원과 간병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100,000	100,000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0	0	100,000	100,000	100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의료기관 의료물품비 아동 물티슈 등 6,750,000원*8개전담병원 = 54,000천원 ○ 전담의료기관 기타물품 = 16,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이송비 50,000원*20명*8개 전담병원 = 8,000천원 - 의료기기 렌탈비 50,000원*20명*8개 전담병원 = 8,000천원 ○ 전담의료기관 간병인비 300,000원*5일*20명 = 30,000천원
		증감사유
		자치경찰제 신설에 따라 서울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수립 및 시행

- 학대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입원시 치료비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으로 자치구에서 지원하지만 의료물품 지원은 없는 상황이고, 피해아동의 대부분이 보호자 없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되므로 간병인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관련 별도 제출자료 참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지원대상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학대피해아동(18세 미만)
 - 영·유아, 소아, 중증피해 중환자, 미혼모, 가출·자살 기도자, 정신 장애아동

○ 사업 주요내용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입원된 보호대상에 안정적 물품지원 필요

- ▶ 아동학대 발생 시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조치한 후, 전담의료기관에 입원조치하면 중증판단의 기준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의료서비스가 진행되어,
- ▶ 학대피해아동이 입원하면 물티슈, 기저귀 등의 의료 물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전담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요청이 있어,
- ▶ 금년 7월부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학대대응팀과 (사)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와 함께 협업하여 각 전담의료기관에 5,000천원 배부하여 단기 사업비로 현금 기부처리하여 일시적으로 의료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 ▶ 중장기적으로는 기부금에 의한 의료물품 지원의 한계가 있어 학대 피해아동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함

① (비품지원) 학대피해아동 입원/퇴원 시 일정하게 지원이 필요한 연령별 비품

연령	필요 물품
신생아 (0세)	· 기저귀(1일 평균 10개), 아기용물티슈, 속싸개, 겉싸개, 1회용 위생장갑, 목욕용품, 거즈, 수건, 티슈 등 · 퇴원 시 : 옷(필요 시)
영유아 (1~4세)	· 기저귀(1일 평균 5개), 아기용물티슈, 1회용 위생장갑, 목욕용품, 거즈, 수건, 티슈, 아동용 마스크 · 퇴원 시 : 옷, 신발(필요 시)
어린이 (5~13세)	· 기저귀(발달상태에 따라 상이), 물티슈, 1회용 위생장갑, 티슈,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비누, 샴푸), 슬리퍼, 속옷(팬티, 이너웨어), 아동용 마스크 · 퇴원 시 : 옷 신발(필요 시)
청소년 (14세 이상)	· 1회용 위생장갑, 티슈,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비누, 샴푸) 슬리퍼, 속옷(팬티, 이너웨어), 마스크

② (기타지원) 병원 이송비, 의료기기(휠체어, 피딩펌프 등)

③ (간병인비) 영유아 및 신체학대가 심한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아동은 부모와 분리되어 보호자가 없어 입원 치료를 위해서는 간병인 지원이 필수

※ 입원치료 시 간병인 1인(8시간) 10~15 만원, 영유아 등은 24시간 지원 필요

- 지난 5월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서울시-서울경찰청 공동협력 협약(‘21.5.)”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신속하고 일원화된 의료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를 지정하였고, 지난 5개월간 전담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학대피해아동은 67명에 이르고 있음.

광역 전담의료기관(8개소)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경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보훈병원	적십자병원	이대서울병원

- 다만,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016년 18,700건에서 2020년 30,905건으로 60.5% 증가하였고, 2020년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접수도 경기도(9,192건, 23.6%) 다음으로 높은 수준(4,167건, 10.7%)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치료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는바, 지원 인원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1.8., 21면 재인용.



[그림 1-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1.8., 21면 재인용.

〈표 1-1-2〉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시도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서울	159	(8.6)	4,008	(10.8)	4,167	(10.7)
부산	34	(1.8)	2,078	(5.6)	2,112	(5.4)
대구	66	(3.6)	1,653	(4.5)	1,719	(4.4)
인천	311	(16.7)	2,788	(7.5)	3,099	(8.0)
광주	11	(0.6)	847	(2.3)	858	(2.2)
대전	94	(5.1)	1,551	(4.2)	1,645	(4.2)
울산	22	(1.2)	1,380	(3.7)	1,402	(3.6)
경기	564	(30.4)	8,628	(23.3)	9,192	(23.6)

차.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된 시민 교통편의 제공

- 동 사업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의 방역 및 안전 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7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176,110	176,110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0	0	176,110	176,110	100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교통안전활동 지원 = 176,110천원 - 녹색어머니 마스크 500원*114,307명 = 57,154천원 - 녹색어머니 손소독제 13,900원*12개*31개서 = 5,171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어머니 전자호각 16,500원*5개*31개서 = 2,558천원 - 모범운전자 어깨경광등 16,500원*6,741명 = 111,227천원
	증감사유	
	지역 교통 치안정책을 보조하는 유관단체의 교통안전 지도물품 지급	

- 동 사업은 통학로 교통지도 및 혼잡교차로 교통정리 등을 통한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특히, 주민참여로 지역의 안전한 교통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21.10.12.)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결과에 따른 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교통안전 교육홍보” 사업에서도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4억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중복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교통안전 교육홍보”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 내역 〉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협력단체 안전용품 및 복제 = 454,954천원 - 모범운전자회 지원 6,600명/25,507명*1,372,225천원-1,049,648.371원 = 354,018천원 - 녹색어머니회 지원 134,999명/794,759명*593,743천원+80,890.444원 = 100,936천원
	증감사유	
	'21.7.1.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지자체 이관	

※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관련 별도 제출자료 참조.

① 모범운전자회

□ 단체현황

- 연혁 : '71년 각 지역단위 활동 시작, '98.9.5. 경찰청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득
- 근거 : 도로교통법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 조직 : 전국 18개 지부 257개 지회 총 25,507명
 - 서울 1개 지부 31개 지회 6,600명
- 주요활동
 - 교통경찰 거리질서 업무보조(출·퇴근시간대)
 - 다중집회 등 행사 교통관리 동원, 교통사고 방지활동

□ '22년 예산편성(안) 및 지원내용

- 예산 : 354,018천원
 - 서울경찰청에서 수요조사 후 물품 조달구매, 각 경찰서를 통해 배부 예정
- 지원내용
 - 근무복제 : 근무복(긴팔, 반팔), 춘추점퍼, 동점퍼, 우의 등
 - 안전장비 : 동장갑, 마스크, 핫팩, 전자호루라기 등

② 녹색어머니회

□ 단체현황

- 연혁 : '69년 '자모교통지도반'으로 출범, '06.2.14 경찰청 비영리단체 등록
- 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 조직 : 전국 3,902개 학교 총 794,759명
 - 서울 196개 학교 134,999명
- 주요활동 : 등·하굣길 어린이교통안전 지도활동 및 교통안전 캠페인 등

□ '22년 예산편성(안) 및 지원내용

- 예산 : 100,936천원
 - 서울경찰청에서 수요조사 후 물품 조달구매, 각 경찰서를 통해 배부 예정
- 지원내용
 - 근무복제 : 정복유니폼, 반팔유니폼, 춘추점퍼, 동점퍼, 우의 등
 - 안전장비 : 교통신호 깃발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각 학교의 등·하교 시간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지도 및 계도 활동
2.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
3. 대규모 행사 또는 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교통정리 등의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봉사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4. 봉사단체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한편, 보조금 사업의 경우 1년의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바,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81-82면 참조.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지방보조금 예산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편성

- 적용대상* : 운수업계 보조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산정기준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총한도액)

$$\times (1 + \text{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한도액 산정에서 제외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 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총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름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문숙